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3.3.29. _ Vol.429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이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책임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장애계에서는 10년이 지난 과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아직도 기약이 없다. 도대체 왜 멈춰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장애인단체는 왜 계속 주장하고 있을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롭게 법안을 발의하고 3월 발표한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해보고, 남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21대 국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01

장애인권리보장법 왜 필요한가

장애인권리보장법 필요성

■ 보호의 대상으로 시작한 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을 재활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봄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7조(지도계발)에서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국민을 지도계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은 돕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의 권리적 접근은 세계적 추세

-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국제 사회는 장애인의 천부적 가치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시작
- 우리나라 장애계는 2003년 연대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개인의 이동 등 조항 포함시켜 성안(안건으로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최종 동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22년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하여 유엔 진정, 직권조사 등 국내법의 한계를 보완하게 됨

■ “새 술은 새 부대에” 한계 봉착한 장애인복지법

-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집중하는 의료적 관점의 장애 정의에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욕구,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누적되고 있음

-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채택하여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권리보장법)’과 ‘장애인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하는 대안 마련
- 윤석열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장애모델 도입,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논의 지원을 주요과제로 선정, 지속 추진 계획을 밝힘

장애인권리보장법 의미

■ 장애등급제 폐지의 완성

- 권리란 특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타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서비스도 요구나 주장보다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것에 고마워하는 게 당연시돼왔음
-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한 것도 장애인마다 놓인 상황과 신체조건이 다르며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등급의 잣대만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비과학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음
- 장애등급 판정 이후 개별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연결되기 위해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와 함께

개인의 권리보장과 개인별 계획수립·지원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함께 주장했음. 하지만 등급제 폐지만 먼저 시행돼 체감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략

정책의 소비자로 거듭나는 방법

- 1962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최초로 천명함
- 이후 각 나라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
- 장애인정책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엄연한 정책의 소비자임.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으나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지는 않음.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계에서 ‘수요자 중심’, ‘자기주도’, ‘맞춤형·사람 중심 서비스’ 등의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도 자기결정권 실현의 반성이자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비롯된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서비스 계약-평가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고 정책의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명문화하고자 함

02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디까지 진행됐나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 상황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법안간 수준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이 보장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장애인권리보장법)하고, 서비스 이용의 권리성 부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고자(장애인복지법) 하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권리구제 방안 명시 : 존엄성, 평등, 안전, 자기결정권, 참여권, 이동 및 접근권, 문화향유, 소득보장,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권리와 단체소송 등 권리구제 방안 제시
- 장애인정책 조정기능 강화 :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시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마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격상(대통령 산하), 부처별 장애인정책책임관제 등

(장애인복지법)

- 서비스 제공절차 변화 : 장애인등록,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전달체계 등

21대 국회 발의 법안별 특징

- 김민석(안)은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측 안을 담은 법안으로 정부가 사전 연구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밝힌 기본법적 성격의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서비스법적 성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을 주요 해법으로 반영한 안임. 정부 차원의 실행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고, 장혜영·최혜영(안) 역시 2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같은 형식의 안을 발의하게 됨

- 장혜영·최혜영(안)은 권리 조항의 세부적 명시,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격상, 장애인정책수립 및 조정을 위한 개념을 대거 포함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한을 명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계약 및 이용 모니터링까지의 절차, 그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있음
- 이종성(안)은 윤석열정부의 이동권 강화 국정 과제에 따라 개인의 보조기기 및 인적 지원,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 구체화·명문화했음. 아울러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전제로 탈시설의 정의와 구체적 주거지원 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명시한 장혜영·최혜영(안)과 달리 ‘탈시설’ 명칭에 대한 법적 조항 없이 보편적 주거권, 주거결정권을 담아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법적근거 마련. 다만, 별도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그 대상범위를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권리보장이 아닌 서비스체계안에 담아두려 함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 과정

2012대선장애인연대 법 제정 필요성 제기, 18대 대선공약 요청(2012년)

- 2012년 12월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 채택

장애계 법안 마련(2013~2016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13~2014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TF(회의 14회, 토론회, 설명회)
- 2014년 8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초안 마련
- 2015~2016년 연속 토론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2년 12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제안
- 2013~2014년 연대 출범, 회의 13회, 토론회
- 2014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안 마련
- 2016년 3월 전국 순회 투쟁

- 양 단체 통합안 마련

- 2015~2016년 권리보장법 병합 논의 TF(회의 10회)

제20대 총선·제19대 대선공약 요청(2016~2017년)

- 2016년 3~4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총선 공약 채택
- 2017년 4월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 채택
-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장관 제정 약속(광화문 농성장)

제20대 국회 발의(2017~2019년)

- 장애계

- 2017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 8회, 정책간담회, 토론회)
- 2017년 9월~2018년 12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회의 7회, 출범결의대회, 간담회)

- 국회

- 2017. 1. 24. 양승조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7장 171조)
- 2019. 7. 18. 오제세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7장 170조)
- 2019. 7. 19. 김승희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법(6장 168조)
- 2019. 10. 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 공청회
⇒ 임기만료 폐기



정부 연구용역, 민관협업체 운영(2018~2021년)

- 2018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 정부 연구용역
- 2020년 8월~2021년 7월 정부 민관협업체 운영
- 2021년 8월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방안 발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제21대 국회 발의(2021~현재)

- 장애계 수정법안 마련

- 2020년 11월~2021년 9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정안 (회의 8회, 토론회, 간담회)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2021년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정안(회의, 토론회) ⇒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국회

- 2021. 9. 27. 장혜영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법(7장 108조)
- 2021. 10. 14. 김민석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법(6장 63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7장 91조)
- 2021. 11. 5. 장혜영 의원(안)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6장 133조)
- 2021. 11. 18. 최혜영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법 (6장 73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6장 107조)
- 2022. 4. 7.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 2022. 11. 1. 이종성 의원(안) : 장애인권리보장법(6장 69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7장 93조)

⇒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

※ 대한민국 법 제정 과정(국회 입법절차)

- 1)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은 10인 이상 동료 의원의 찬성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개정안 제출
- 2) 국회 상임위 심사 : 국회 소관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 상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표결의 순서로 심사
- 3)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심사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실시
- 4) 국회 본회의 심의 : 법률안 상정,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 5) 정부 이송 및 공포

03

장애인권리보장법 뜯어보기¹

제1장 총칙

목적

- 4개 법안의 공통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음
- 최혜영(안)은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장애 정의

- 네 개 법안 모두 사회적 개념을 반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 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의 날

- 김민석·최혜영·이종성(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동일
- 장혜영(안)은 4월 20일 날짜는 동일하나 ‘장애인 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인권주간’으로 표현

차별점

- 최혜영(안)은 ‘**장애주류화 조치**’ 조항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관점을 통합하는 장애주류화 조치 취하도록 신설

1 가장 최근 발의된 이종성(안) 기준으로 순서 정리하고 본문은 법안 발의순서대로 정리함. 지면관계상 특징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음

제2장 장애인의 권리 보장

■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정의

- **존엄성** :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평등과 차별금지**

평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가지고 향유하며 사회참여 모든 기회에 접근할 권리(장혜영·최혜영(안))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김민석·이종성(안))

- **안전**

장혜영·최혜영(안)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김민석(안)	신체의 자유·생명권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착취·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김민석(안) 없음

- **참여**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 등에 참여할 권리, 공적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누릴 권리, 장애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 **참정**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스스로 투표하고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김민석(안))

- **단체 결성과 가입** : 국가의 공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집회, 결사의 권리

- **사생활 존중** :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하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의사표현, 정보접근권** :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접근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김민석·최혜영·이종성(안))
이동권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이종성(안))

- **사법접근권**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 **탈시설, 자립생활**

김민석(안)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
최혜영(안)	탈시설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통합 및 자립하여 살아갈 권리
이종성(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

- **문화향유** : 문화, 예술, 체육활동,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소득보장**

적절한 생활수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권리(최혜영(안))
소득보장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김민석(안))

- **노동, 근로**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할 권리 (최혜영(안))

- **교육** : 장애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건강권** :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 **가족 구성**

장혜영·최혜영(안)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임신·출산·양육·가사를 비롯한 가족 및 가정 구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및 재생산 권리
김민석(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 출산, 양육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

- 여성장애인

김민석(안)	임신, 출산, 양육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 성폭력·가정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혜영(안)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
이종성(안)	임신·출산·육아·가사 등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

- **장애아동** :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차별점

- 네 법안의 입장차가 가장 많이 나는 조항은 **‘주거와 주택, 지역사회 자립생활’**임

장혜영(안)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등을 적절한 주거생활의 권리로 보장
김민석(안)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를 명시하였으나, 주택 건설, 보급·개선에 관한 조항은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수준
최혜영(안)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여 탈시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탈시설 외 주거대책에 대한 언급 부족
이종성(안)	장애인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결정권 보장하고 있음

- **소득보장** : 장혜영·최혜영(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본으로 하되 장애특성 및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한 소득보장제도, 자산형성지원 제도(신설) 등 적극적 제안. 김민석·이종성(안)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세제감면, 이용료 감면 등 현재와 유사

- **근로 및 고용, 노동권 보장** : 장혜영·최혜영(안)은 분리된 환경의 보호고용과 직업재활훈련을 지양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김민석·이종성(안)은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연구 의무화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음

- **고령장애인, 장애인(신설)** : 장혜영(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종성(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노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건강·문화·여가 등에 적극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복합차별을 받는 장애인(신설)** : 장혜영·최혜영(안)은 장애인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출신, 재산, 출생, 연령 등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등에 기초한 정책 개발, 예산 편성, 교육 등의 조치 필요성 의무화

- **소수장애인(신설)** : 장혜영·최혜영(안)은 발생 빈도가 낮은 소수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제3장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기간 및 주체 : 네 법안 동일(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 주요내용 : 네 법안 모두 장애인정책의 목표, 추진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에 필요한 자원규모와 조달방안 신규 포함
- 장혜영·최혜영(안)은 이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김민석·이종성(안)은 국내외 장애인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 포함

지역별 장애인정책계획(신설) : 네 법안 모두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정책위원회(국가장애인위원회), 지역장애인 (정책)위원회

● 국가장애인위원회·장애인정책위원회

- 명칭

장혜영·최혜영(안)	김민석(안)	이종성(안)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 김민석(안)만 현재와 동일한 국무총리 소속이며, 장혜영·최혜영·이종성(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주요내용 : 장혜영·최혜영·이종성(안)은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장애인정책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협조, 장애인정책 개발·연구·실태조사,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점검 등의 심의·의결
- 김민석(안)만 현재와 같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구분
- 장혜영·최혜영·이종성(안)은 사무처 두도록 함
- 장혜영·최혜영(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에 타 기관에 자료 요구 권한 부여

● 지역장애인위원회

- 김민석(안)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며, 이종성(안)은 명칭만 변경
- 장혜영·최혜영(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 계획 및 예산 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의 심사청구. 15인 이내 위원 중 장애인과 가족 대표가 과반수여야 함

■ 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

-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중앙부처에 장애인 정책책임관 지정할 수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사문화되어있음
- 네 법안 모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최혜영·이종성(안)은 의무조항으로 격상하였음

■ 장애인지예산과 결산(신설)

- 김민석(안) 없음
- 장혜영(안) 각 정부부처가 정부예산 수립 시 매년 6월 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지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국가 장애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말까지 기재부장관에 통보하며, 기재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
- 최혜영·이종성(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로 대상 확대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도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

■ 장애영향평가(신설)

장혜영(안)	없음
김민석(안)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업 복지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최혜영(안)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추진하는 법령, 계획 및 사업 등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하고 결과 반영해야 함
이종성(안)	대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장애인 권리 관련 사업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 최혜영(안) 없음
- 장혜영(안)은 ‘장애인 정책연구’ 조항에서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개발사업 실시를 위해 ‘국가

장애연구원' 설립 명시

- 김민석(안)은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영향평가 지원,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제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사업 등 기능 확대 제안
- 이종성(안)은 현재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목적과 동일하며, 사업 범위에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욕구조사 등과 관련한 교육, 홍보,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추가

■ 장애인지원기금·권리보장특별기금(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제안
- 최혜영(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제안. 재원은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 또는 기부, 복권기금, 장애인차별금지법 과태료 등으로 마련

제4장 장애인 권익옹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김민석·최혜영·이종성(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장혜영(안)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명명
- 네 법안 모두 중앙과 지역 기관 구분
- 목적 : 김민석·이종성(안)은 현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며(장애인학대 예방), 장혜영·최혜영(안)은 권리보장으로 확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 중앙 : 지역기관 지원, 장애인 학대(권리침해) 예방,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 지역 :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임시 조치 등

☞ 기타

- 장혜영·최혜영(안)은 '권리침해 모니터링' 조항 규정. 장혜영(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최혜영(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상 면담시 탈시설 의사를 물을 수 있으며, 권익옹호기관장은 시설장애인이 탈시설(거주 전환지원)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하도록 탈시설 지원 조항 추가
- 장애인권리침해 정보시스템(신설) : 장혜영·최혜영(안)은 장애인권리침해 관련 정보 공유 및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권리침해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피해장애인 및 가족,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한 정보, 권리침해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며, 운영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단체소송, 소송허가(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권리옹호센터)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 신설
- 소송허가 조건 : ▲다수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 ▲소송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결 없음 ▲소송제기 단체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조취 요청한지 14일 경과



- 단체소송 허가 및 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

차별점

- 이종성(안)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1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유인 제고

-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유형, 정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신청·이용할 권리
-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신청할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없음)
- 복지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할 수단 마련)

04 장애인복지법 뜯어보기²

제1장 총칙

목적

- 네 개 법안 공통 목적은 장애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지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함

기본원칙·서비스 이용권리(신설)

- 김민석·이종성(안)은 공급자 입장의 제공원칙 4가지 제시(차별금지, 자기결정권 존중 등)
- 김민석(안)은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강조 하였고, 이종성(안)은 사회참여 권리와 사회통합 목적 강조
- 장혜영·최혜영(안)은 '서비스 이용권리' 조항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5가지 서비스 이용 권리 규정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장애인표준소득(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매년 복지부장관이 고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표준소득 보장금액'으로 책정, 18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여 국가의 적극적 소득보장 제안

이동지원(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장애인이 거주지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차량 혹은 이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하여 서비스 이용편의 확대

² 지면관계상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생략하고 1장~3장까지 비교



■ **탈시설 지원, 자립생활 지원(신설)**

● **탈시설 지원,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장혜영(안)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신청한 장애인 등에 대한 거주전환 조치, 지역사회 자립정착지원금 지급,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임대보증금 용자·보조 등 규정. 중앙과 지역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등 제안
김민석(안)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조항에서 매년 자립지원 조사, 퇴소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 수립 등 규정. 중앙 및 지역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근거 규정 제안
최혜영(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거주전환 조치,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등
이종성(안)	없음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 지원**

장혜영·최혜영(안)	이동·교육·주거·의료 및 건강·탈시설·동료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가중된 차별과 복합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에 대해 적극적 조치
김민석(안)	주택지원, 주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시책 강구.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이용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상담·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종성(안)	주거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주거서비스 이용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 **자산형성 지원사업(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탈시설하는 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하도록 규정

■ **장애인주택 및 주거지원(신설)**

● **장혜영·최혜영(안) 조항 : 주거지원(복지)시책, 주거 지원, 주거수당의 지급,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 주거지원(복지)시책 : 장애인 주거복지 담당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 주거정책 실무협의기구 구성하여 매년 장애인

주택보급,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 확보, 장애인 1인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고령장애인가구 등 지원대책 수립

- 주거지원 : 건설임대주택 물량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에게 추가 할당, 주택임차료 보조, 최저 주거기준 미충족시 대책, 주택개조 및 원상 복귀 비용 보조, 민영주택 장애인의 채무 보증 등 규정. 단 장혜영(안)은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조항 추가
- 주거수당의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세대주에 소득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 고려하여 주거수당 지급(의무조항)
-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개보수 시설·설비, 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김민석(안) : 없음**

● **이종성(안) 조항 : 장애인주택의 종류, 장애인주택 보급, 주거서비스 지원, 주거서비스지원 실태조사**

- 장애인주택의 종류 : 돌봄주택, 자립주택, 단기 지원주택, 생활주택 등
- 장애인주택의 보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임차자금, 주택개조, 주거유지 비용 지원 등 시책 마련하여야 함
- 주거서비스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결정·시행과정의 적극적 참여 보장, 장애인의 요구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택임대료·주택 개보수·주거유지 지원 비용 지원 등 규정

- 주거서비스지원 실태조사 : 복지부장은 3년마다 주거서비스지원 실태조사 실시(의무조항)

■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개발·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연구·시범운영기관 지원 등 규정하여 서비스 발굴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조

■ 차별점

- 장혜영(안)은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조항 추가.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장애인서비스센터에 실종 장애인 담당인력 배치 신설

제3장 장애인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 네 개 법안 모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함
- 김민석·이종성(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없이 서비스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 및 취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복지(장애)서비스 이용증

- 김민석·이종성(안)은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동일
- 장혜영·최혜영(안)은 장애인등록 조항 없음. 대신 욕구조사(사정) 등 결정에 따라 복지(장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비스이용자로 판정하고, '복지(장애)서비스 이용증' 발급 규정 신설

■ 장애서비스 사정, 욕구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신설)

- 장애서비스 사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 장혜영(안)은 서비스 신청 후 2주 내 지역장애서비스센터에서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에 대해 사정(부득이한 경우 2주 내 연장 가능). 결과는 지자체에 보고되며, 지자체는 2주 내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결정하여 시도지사·지역장애서비스센터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지자체는 서비스이용증 발부자에 대해 2주 내 지역장애서비스센터장에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은 이용자에게 서면 통지
- 욕구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 최혜영(안)은 서비스 신청 즉시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하여 2주 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은 4주 이내 복지서비스 내용과 지원 양 포함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득이한 경우 4주 내 연장 가능). 결과는 지자체에 보고되며, 지자체는 2주 내 승인여부 결정하여 시도지사·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김민석·이종성(안)은 활동지원, 보조기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주거서비스 지원) 이용,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 신청 있는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장혜영·최혜영(안)보다 대상 협소)
- 개인별 지원계획 : 김민석·이종성(안)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김민석(안)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지원 대상자인 경우 포함

- 장혜영·최혜영(안)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해 변경·수정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계약, 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서비스 구매·계약 : 장혜영·최혜영(안)은 이용자가 직접 혹은 지역장애서비스(종합 지원)센터가 대행하여 계약할 수 있음
- 서비스 연계 : 장혜영·최혜영(안)은 지역장애 서비스(종합지원)센터장은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해야 함(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 연장 가능).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용 및 양, 제공방법, 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 장혜영·최혜영(안)은 서비스 계약 및 연계 이후 지역장애서비스(종합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 준수 여부, 장애서비스 효과성 및 만족도 등 조사 의무

■ 국가장애서비스공단,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신설)

- 김민석·이종성(안) 없음
- 장혜영(안)의 명칭은 국가장애서비스공단과

지역장애서비스센터이며, 최혜영(안)은 중앙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종합지원 센터로 명명

- 중앙 : 장애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관련 지침·편람·매뉴얼 개발·보급·교육, 지역 장애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원, 복지제공 인력 교육·자격관리, 장애인실태조사,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서비스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 지역 :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업무 내용은 요구조사, 서비스 내용과 지원 양 사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변경·수정, 서비스 계약의 조력 및 대행,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계약관리 조력, 자립생활주택 위탁 운영,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장애서비스 지원 관련 협력체계 구축, 장애서비스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장애서비스 정보 관리

기타 쟁점 사항

■ 다수의 권익증진 방안으로 고려할 ‘단체소송’

- 다수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피해일지라도 지금은 개별적인 소송 제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개인 차원의 피해보상에 한정되는 등 사회적 자원 낭비되고 있음
- 단체소송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적용 중임
- 장혜영·최혜영(안)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민석·이종성(안)은 없음



- 개인의 권리구제절차가 미흡한 현실과 확대에 한정된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합의안 도출 필요

-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통 입장을 고려한 합의 필요
- 이념적 논쟁보다 지역사회 주택 및 주거서비스 확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권리보장법 제정과 복지법 개정에 대한 추진을 모색해야 함

■ **소득보장 욕구 충족 대안 '장애인표준소득'**

- 장애인실태조사 이후 줄곧 장애인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장혜영·최혜영(안)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표준소득 신설을 제안하고 있으나 김민석·이종성(안)은 없음
- 장애인으로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 교통비, 재활·학습비 등 기초선을 마련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논의 시작 필요

■ **'장애인의 권리 및 권리구제 절차' 법적 근거 마련 책무 이행부터**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조항 없이 의료적 장애 개념과 서비스 수급자격과 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법 형태로 존재해오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위한 근거로서의 역할 수행해 오
- 장애인정책 조정기능 강화(정책조정위, 인지 예산, 영향평가, 장애인정책책임관제 등), 서비스선택권 및 소비자권한 강화(개인별계획 수립, 계약, 평가, 새로운 전달체계 등)를 위한 실행가능성 논의를 앞세우기 전에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로서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 도입,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로서의 책무이행 관점에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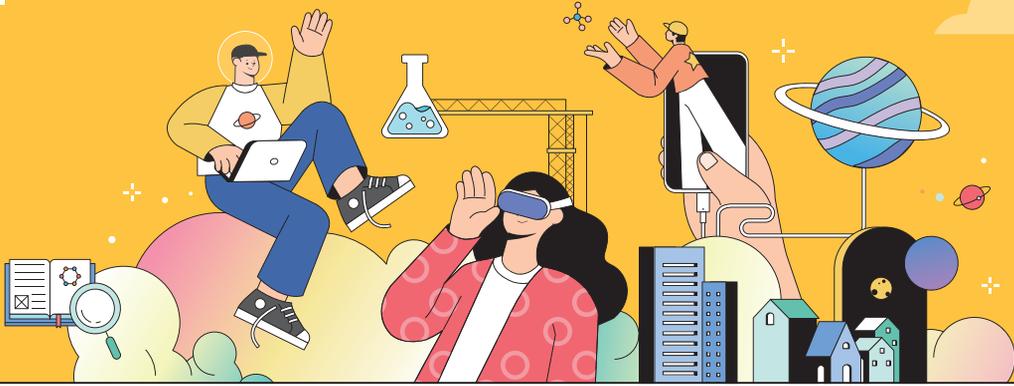
05 장애인권리보장법 해법의 키워드

■ **'탈시설' 쟁점보다 '주거서비스 지원'부터**

- 탈시설과 주거지원에 대해서 법안별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으나 권리보장법에 대한 관심이나 이견보다 함께 진행된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성과 없이 종결

‘모두(MODU)’ 장애학생 모집

Make Our Dream Unlimited



신청기간

2023. 3. 22. (수) ~ 2023. 4. 4. (화)

선발대상

전국 대학교 이공계 장애대학생
※ 학년 제한 없음, 자연과학·공학 계열 가능(의치약학 제외)

선발기준

경제적 상황, 진로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

지원내용

- 진로활동 지원 장학금 1인당 4백만 원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
※ 상반기 활동 수행 정도와 성과에 따라 하반기 장학금 지급 지속 여부 결정
-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전공계열별(조별) 진로 설계 멘토링 제공 등 개인 진로활동 지원
※ 진로활동 예시(성과 증빙 가능)
 - 자격증 취득 · 어학 시험 고득점 달성
 -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수료 · 산업체 견학 등 직업 체험
 - 경시대회, 연구·아이디어 공모전 등 참가 및 수상
 - 국내 학회, 해외 학술대회 등 학술 활동 참여
 - 청년창업 지원 사업 및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 준비
- 이공계 장애대학생 소통 네트워크 조성, 우수활동자 상장 및 상급 지급, 장학생 전원 활동 수료증(장학증서) 제공 등

사업일정

- Search-Up Camp(4.28~29)
오리엔테이션 및 진로 계획 수립
- Build-Up PT(8.25)
개인 및 조별 진로활동 점검, 우수활동조 시상
- Rank-Up PT(11.10)
진로활동 성과 공유, 활동 수료증(장학증서) 수여 및 우수활동자 시상
- 진로활동·멘토링(5.1~10.31)
개별 진로활동 수행 및 조별 진로 설계 멘토링 진행
※ 장학금 지급 1차(5.4), 2차(8.30)

제출서류

신청인 정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장애인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페이지 접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daf.kr) 참고)

문의

이메일 mail@kodaf.kr 전화 02-783-0067